

## 이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0. 6. 3  
자치행정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년 5월 16일 이천시장 제출  
나. 회부일자 : 2000년 5월 22일  
다. 상정일자 : 제39회 이천시의회(임시회)  
    제1차(2000. 6. 2) 자치행정위원회 상정  
    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의결

### 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김종춘)

#### 가. 제안이유

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,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를 제정하려는 것임.

#### 나. 주요골자

-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적용범위와 대상사무의 기준등에 관하여 정함(안 제3조, 제4조).
-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은 수탁기관의 재정부담능력, 시설·장비, 기술보유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, 수탁사무처리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, 그 선정심의를 위하여 이천시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함(안 제5조, 제6조, 제7조).

(제39회 - 2차 본회의)

-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자의 의무·위탁내용·위탁기간·예산지원에 관한 사항·협약내용을 위반한 때의 의무이행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공증하도록 함(안 제9조).
-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수탁기관을 경유 시장이 재결하도록 하는 이의신청제도에 관한 규정을 정함(안 제12조)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이철호)

- 본 제정조례안은 법령에 규정된 사무의 민간위탁 규정에 따라 행정간여의 폭을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,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,
- 주요내용은 민간의 위탁사무의 기준, 수탁자 선정, 협약체결등이며,
- 심의대상 의견으로 조례 제명에서의 명료성과 제3조, 제4조, 제5조, 제6조의 자구의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본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만장일치)

7. 기타사항 : 없 음